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0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김선교 · 이현승 · 김승수
김미애 · 구자근 · 박충권
최수진 · 김성원 · 김상훈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사육·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시장 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도 낮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영업 관리 중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규정하거나 연구개발, 창업·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능은 포함하지 못

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며,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를 제조·수입·유통·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3. (현행과 같음) 14.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u>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u>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②·③ (생 략) <u><신 설></u>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72조의3(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u>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 물사료, 반려동물용의약품, 반 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 물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